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54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물진료의 정의 내 동물의 안락사 포함	2
※ 참고자료	
[참고] 동물보호센터의 인도적인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고시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25.
3. 회 부 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동물진료의 정의 내 동물의 안락사 포함

개정안은 현행법상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동물진료의 정의 내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의사만이 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u>동물의 사체</u>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동</u> <u>물의 안락사 및 동물의 사체</u> ----- -----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수의사만이 동물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¹⁾

1)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또한, 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별도로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체 검안 역시 전문적인 면허를 지닌 수의사만이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나,

진료의 사전적 정의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²⁾임에 따라, 치료로 보기 어려운 사체 검안의 진료행위 포함 여부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수의사만이 시행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안락사 역시 치료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체 검안과 유사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사체 검안과는 달리 동물 안락사를 별도로 진료행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오직 수의사만이 동물 안락사를 행할 수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관련 법률인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오직 수의사만이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³⁾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서 금지하되 면허에 따른 행위 등을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⁴⁾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④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면허를 지닌 수의사가 제한적으로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사체 검안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동물진료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히, 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경우 현행법상의 무면허 진료행위에 관한 벌칙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금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동물진료 행위에 동물 안락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나, 그 실제 목적은 현행법상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규정을 활용하여 동물 안락사를 오직 수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이와 같이 수의사만이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동물 안락사를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료’의 개념적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동물 안락사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의 법률상 행위로서 제도화시키는 효과 또한 발생할 것이므로,

동물의료 과정에서 최후적 수단에 해당하는 안락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 안락사의 요건 및 사후관리 등 제도적 관리 방안의 입법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형태로 이미 진료행위에 포함된 사체 검안은 수의사에게 검안부 작성 및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⁵⁾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의 경우에도 ① 수의사가 ②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④ 마취 등으로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점 역시 참고할 수 있을 것임.⁶⁾

5)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재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안락사 대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안락사’ 대신에 ‘인도적인 처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이 동물의 안락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6

6)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④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④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 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약제 사용기록은 「수의사법」 제13조에 따른 진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진료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75호, 2025. 7. 18. 시행)

제20조(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 ①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1. **중증 질환 및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된 개체**
2.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3.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호르몬 질환 등에 감염되어 **분양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4.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5.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체로서 질병 및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고통을 경감하고 질병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개체관리카드(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인도적인 처리의 원칙)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 하고,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인도적인 처리의 절차) ① 수의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건강상태 및 개체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1명 이상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2.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

④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한 동물은 수의사가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자는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